

경 제 과

감사항목	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	조 치 계 획			비 고
		계	완결(계속추진)	추진중	
14	2	2	1	1	

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

(경제과)

연번	감사항목	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	조치계획	완결여부	비고
1	택시업체 근로자에게 근무복지 지원 검토	○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인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택시 운전사들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근무복을 제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	○운수업체 지원대상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 50조(재정지원)와 「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」 제2조(재정지원)에 지원사유가 명시되어 있음. - 지원대상 : 여객의 안전관리 또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·장비의 확충이나 개선 ○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4호의 ‘직무상의 행위’에 저촉 - 법령에 근거한 경우 외 불가 ○따라서 시설·장비의 확충이나 개선 외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하나 향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하겠음	완결 (추진불가)	

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

(경제과)

연번	감사항목	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	조치계획	완결여부	비고
2	읍지역 이면도로 주차 홀·짝제 운영방안 강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읍 시가지 이면도로에 차량이 양방향으로 주차 되어 있어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많음 ○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홀짝제 주차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이면도로 홀짝제 주차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경찰 청장이 일방통행 구간을 지정하여야 함 ○'10년도에 시가지 교통체계개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일방통행 구간 지정 협의 및 홀짝제 주차 구간을 확대할 계획임 	추진중	